

## 객원교수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외국인 객원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객원교수는 학계, 정관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 등 국내·외 사회 각 분야의 전·현직 인사로서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 또는 학문적 업적을 쌓은 자, 해당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.<개정 2019.1.23.>

**제3조(임무)** 객원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9.1.23.>

**제4조(임용계약)** ① 겸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계약 임용하고,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의 명칭으로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9.1.23.>

②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③ 객원교수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재계약이 없으면 당연 면직된다.<개정 2019.1.23.>

④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법규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원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19.1.23.>

⑤ <삭제 2019.1.23.>

⑥ <삭제 2019.1.23.>

**제5조(보수)** 객원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강의를 담당할 경우 시간강사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한다.<신설 2019.1.23.>

**제6조(임용절차)** 객원교수는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학부장, 대학원장, 부서장(부설기관장)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.<신설 2019.1.23.>

**제7조(계약)** <삭제 2019.1.23.>

**제8조(구비서류)** 객원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추천서<개정 2019.1.23.>
2. 학력증명서<개정 2019.1.23.>
3. 경력증명서<개정 2019.1.23.>
4. 재직증명서<개정 2019.1.23.>
5. 주민등록등본(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)
6. 이력서<개정 2019.1.23.>

**제9조(처우)** ① 국외에 거주하는 인사를 객원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내의 공무여행을 할 때에는 본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객원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사택과 연구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④ 기타 객원교수에 관한 처우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 2015. 1. 13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폐지규정) 교직원인사규정의 특수신분교수(객원교수)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9. 1. 23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